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 부 패 수 범 사 례

2015. 3.



2015년도 반부패 수범사례

①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수범사례 목록(20건)

지정 번호	수범사례	실시기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기반 구축 노력		
1	부서별 청탁등록 대상 업무 및 청탁유형 설정	공무원연금공단
2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금품수수 및 제공금지	한국동서발전
3	재직 중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한 취업청탁 금지 명문화	한국수출입은행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 관련 행위 제한		
4-1	임직원 행동강령 및 부조리신고지침의 적용범위를 파견근로자로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
4-2	교육기관 종사자(사립학교 교직원, 비정규직 등) 윤리행동강령 제정	대전광역시교육청
5	공무원 범죄와 관련된 민간인도 고발대상자로 확대	제주교육청
◇ 이해충돌 차단장치 강구		
6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 수칙 제정 및 실시	근로복지공단
7	조사담당공무원의 사적 관계 사전고지 의무	국세청
8	재직자와 직무관련 퇴직자간 불필요한 사적 접촉 제한	한국환경공단 등
9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의 금지 등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한국수출입은행
11	사건관계인(직무관련자)과 부적절한 사적 접촉 제한 등	대검찰청, 경찰청
12	고위직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규정 도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3	직무관련자와 공적·사적 국외여행 사전 심사(예외적 승인)	한국철도공사
◇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		
14	부패행위 제언·주선자에게 1단계 상향된 징계처분 요구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15	부패행위자, 조사분야 보직 영구 금지	국세청
16	비위행위 징계처분자 전보조치 및 청렴교육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17	부패행위자 승진임용 제한 규정 강화	한국조폐공사
18	부패공익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호 위반자 구체적 처벌기준 도입	우체국금융개발원
◇ 청렴공직자 우대 및 부패취약업무 특별관리 시스템 구축		
19	청렴마일리지 운영 및 승진 가점화	한국남부발전
20	부패위험 관리체계 운영	대한주택보증

② 주요 반부패 수범사례 목록(54건)

지정 번호	수범사례	실시기관
◇ 부패 취약분야 종합 관리체계 구축		
1	상시 e감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한국전기안전공사
2	청렴담당부서에서 직원 인사 운영 시 사전검증 절차 운영	행정자치부
3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전수 실시	전라북도
◇ 이해충돌 차단장치 강구		
4	이해관계 직무회피 대상에 지연, 학연 포함	교통안전공단
5	직원이 관계된 업체와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수의계약 제한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또는 재취업한 업체와는 2년간 계약체결 제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6	퇴직 직원의 재취업 관련 행동강령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7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마련	"
8	퇴직자에 대한 특혜금지를 위해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	한국철도시설공단
9	입찰 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제출 의무화	한국수력원자력
10-1	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 명문화	공정거래위원회
10-2	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 명문화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전사후 신고	공정위, 보훈처 외
11	직무와 관련없는 경우에도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실명 기재 의무화	인천광역시
12	재산등록 대상 확대	한국석유공사
13	소속기관 등에 가족채용 제한, 인사청탁 등 금지	대구광역시
◇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14	기술평가위원 자동선정교섭 시스템 구축·운영	조달청
15	감사사례를 DB화하여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한국화학연구원
16	홈페이지에 자체감사 결과(적발 사례 등)의 즉시 공개	한국지역난방공사
17	금지된 금품의 처리결과를 외부에 공개	인천국제공항공사
18	정보공개 부정행위(거짓 정보공개, 불이행 등)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관세청, 통계청
◇ 예산낭비 방지장치 강구		
19	모든 수의계약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소방방재청 등
20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공주시
21	예산낭비 신고내용 조치결과 사례집 발간 및 기관 홈페이지 공개	부산,경기,충남 등
22-1	공용재산 사적 사용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국서부발전
22-2	부정수급 금액의 2배 환수제 도입	한국산업인력공단

23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범위를 부서단위로 확대	구 해양경찰청 등
24	업무추진비 인적사항 기재대상 집행기준을 30만원으로 강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5	업무추진비 총액·건수 및 집행대상자 명단까지 공개	경기도교육청
26	전체 직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사내포털)	한국전력공사
27	공금횡령 방지 관련 회계부정 방지대책 실시	구 안전행정부
◇ 협업을 통한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28	외부전문가 감사인력 Pool 구성·운영	경기도 부천시
29	(공사, 물품, 용역 등) 사업별 청렴지킴이 운영	제주교육청, 대전시
30	청렴시민감사관 독립성 강화 및 시정요구안 수용	공정거래위원회
31	산업재해 관련 소규모 사업장 실무자에 대한 청렴교육 실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관리감독 기능 강화		
32-1	산하기관 감사결과 공유시스템 구축·운영	미래창조과학부
32-2	시·자치구 감사협의회 구축·운영	서울특별시
32-3	산하기관과의 반부패 워크숍 개최	중소기업청
33	전 부서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관리자에 문자메시지 통보)	경기도 성남시
34	산하기관(기타 공공기관 및 단체)에 대한 반부패 청렴평가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 민간부패 개선을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		
35-1	공급자 행동강령 제정·시행	한국전력공사
35-2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제정·시행	한국수력원자력
36	협력사 부패행위자 현장퇴출제	한국철도시설공단
37	부패위험성이 높은 민간분야에 대한 제도 정비	경북교육청, 국토부 등
38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	한국동서발전
◇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교육 강화		
39	기관장 및 고위직 공무원이 선도하는 청렴교육 실시	국세청, 해수부 등
40-1	기관장 주관 순회 교육 실시	한국남부발전
40-2	상임감사위원 순회 교육 실시	한국공항공사
41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실시	국가보훈처, 서울시 등
42-1	직무연수·훈련 과정에 청렴교육 과정 운영	전남교육연수원
42-2	직무연수 과정 중 일정 시간을 청렴교육에 배정	국가보훈처
43	비위행위자 외부위탁교육 명령 규정화	한국가스안전공사

◇ 참여형 청렴시책 추진		
44	실무자 회의체 상시 운영을 통한 제안활동 활성화	통일부
45	고위공무원 청렴수준 자가 진단	공정거래위원회
46	청렴결의 대회(청렴 서약식)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47	청렴알리미제 운영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48-1	반부패·청렴 Day 운영	국가보훈처
48-2	월1회 청렴의 날 지정 및 운영	부산시교육청
49	부서간 청렴경쟁시스템 운영	경기도
50	공직자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시행	경기도
◇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51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후 위법부당한 처분 한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파면	전라남도
52	청렴의무 위반시 징계 시효 연장(3년→5년)	한국공항공사
53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등 협력업체와의 부당한 거래 관계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 제정	한국조폐공사
54	비위면직자를 신규채용 결격사유에 포함	한국전기안전공사

【붙임1】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수범사례 세부 내용 1부.

【붙임2】 주요 반부패 수범사례 참고 자료 1부. 끝.

붙임1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수범사례 세부 내용

1. 부서별 청탁등록 대상 업무 및 청탁유형 설정

(취지) 감사 지적 등이 빈발하는 **고위험 부패**에 대해서는 사후 감사나 적발보다는 **자율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패를 예방

▶ 부서별 청탁등록 대상 업무 및 청탁유형 설정(공무원연금공단)

- 청탁가능성이 높은 28개 업무 51개 유형을 선정, 청탁 대응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예시) 청탁등록 대상 업무 및 청탁 유형

부서명	업무명	청탁 유형
연금사업실	수급자관리	연금지급 정지를 위한 소득심사시 소액으로 정지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청탁
재해보상실	재해보상급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등 재해보상급여를 청구하고 급여 심의회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특혜 제공

2.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금품수수 및 제공금지

(취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의한 금지된 금품 수수뿐만 아니라 **제공도 금지**하도록 구체화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금품 수수 및 제공금지 규정(한국동서발전)

- 행동강령 제17조(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6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제18조에 따라 제공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금품 등 제공 금지) ① 임직원은 제16조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다만 제16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의 공무원에게 업무용 자동차, 휴대폰, 업무추진비용 법인카드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식사비를 대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직 중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한 취업청탁 금지 명문화

(취지) 임직원의 경우 고객 등을 상대로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타인) 취업 청탁 금지 규정 마련

▶ 재직중 취업청탁 제한(한국수출입은행)

- 임직원 행동강령 제25조의2 (재직 중 취업청탁 제한) 임직원은 **고객 등을 상대로 하여**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타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임직원 행동강령 및 부조리신고지침의 적용범위 파견근로자로 확대 등

(취지) 행동강령 적용대상을 파견근로자, 교육기관 종사자까지 확대하여 공직자와 동등한 수준의 청렴성 유지

▶ 행동강령 적용대상을 파견근로자까지 확대(한국토지주택공사)

- 간접 고용계약 형태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까지 직원과 동등한 수준의 청렴성 유지
 - * 임직원 행동강령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LH의 모든 임직원(「파견근로자 운영지침」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 * 부조리신고지침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LH의 모든 임직원(「파견근로자 운영지침」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 교육기관 종사자 윤리행동강령 제정(대전광역시교육청)

- 사립학교 교직원, 비정규직 등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통제 필요
-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이외의 종사자들에게 행동강령에 준하는 윤리 행동강령을 적용받게 하여 부패예방의 사각지대 축소
 -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기관 종사자 윤리행동강령 제5조(직무 수행의 공정성)
 - ② 종사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제척, 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 할 경우에는 윤리강령책임관과 상담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5. 공무원 범죄와 관련된 민간인도 고발대상자로 확대

(취지) 직무관련 범죄 고발대상자에 소속기관의 공직자 외에 재직 중 부패와 관련된 퇴직 공직자, 공무수행사인 및 민간심의위원 등으로 확대

▶ 직무관련 고발 대상자 확대 및 고발기준 강화(제주교육청)

- 공무원에서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공무원 의제자, 공무원 범죄와 관련된 민간인’**까지 확대
- 고발기준 강화

비리유형	개 정 전	개 정 후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 횡령·뇌물수수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 공금횡령 또는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경우(금액불문)
유 용 (개인)	◦ 정당한 사유 없이 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20일 이상 유용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7일 이상 유용한 경우

6.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 수칙 제정 및 실시

(취지) 주요 직무별 핵심역량 발휘를 위해 준수해야 할 상황별 구체적인 청렴행동수칙 마련

▶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 수칙 제정 및 실시(근로복지공단)

- 제1조(목적)** 동 지침은 윤리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하여 직위별·직무별로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세분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임직원의 청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동 지침은 근로복지공단의 임원과 「직제규정」에서 정한 해당 부서의 모든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등 특정업무직관리세칙」에 의한 특정업무직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청렴행동수칙)** ① 임원 및 관리직원이 지켜야 할 청렴행동수칙은 별표1과 같다. ② 공단 주요 직무별 소속 직원이 준수해야 할 청렴행동수칙은 별표2와 같다.
-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공단 임직원은 청렴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이사장은 임직원의 청렴행동수칙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 제5조(징계)** ① 이사장은 청렴행동수칙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임직원에게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세부내용은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종보고서'(116P) 참조

7. 조사담당공무원의 사적 관계 사전고지 의무

(취지) 조사공무원, 감사인 등 직무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업무에는 혈연·지연·학연 등에 대한 강화된 이해관계 관리 의무 부여

▶ 조사공무원에게 사적관계 사전고지 의무 부여(국세청)

- 조사공무원은 수입 세무대리인이 위임장 제출시 조사업체 관계자 및 수입 세무대리인과의 사적관계 등을 기재하여 접수하도록 제도화

*사적관계 : 혈연·지연·학연, 동일부(본·지방청·세무서 같은 과) 근무 등

- 조사팀장은 공정한 조사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회피 신청**, 조사관서장은 **조사팀 교체 가능**

▶ 감사인에 대한 직무회피 규정 마련(우체국물류지원단)

- 감사적발을 무마하기 위한 청탁 등의 대상이 되는 부패발생 위험성을 예방하고, 업무처리 과정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

* 감사업무세칙 제8조의 2(감사인의 회피)①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 업무의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 ②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감사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시적으로 업무를 재배정 할 수 있다.

8. 재직자와 직무관련 퇴직자간 불필요한 사적 접촉 제한

(취지) 골프, 식사·사행성 오락, 여행 동반 등의 사적 접촉행위 제한

▶ 퇴직자와 사적접촉 제한(한국환경공단)

-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의2(전관예우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인 공단 퇴직자(이하 ‘퇴직자’라 한다.)와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단, 식사와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행위

- ② 임직원은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의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취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 등 수수 행위 금지뿐만 아니라, 금전·물품 등을 협찬이라는 명목으로 받는 행위까지 금지

▶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의4(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①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심사평가원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10.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의 금지 등

(취지) 거래제한 행위를 주식투자 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 기업에 대한 모든 재산상 거래로 확대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을 담당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로 확대(한국수출입은행)

- 임직원 행동강령 제3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② 임직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기업에 대한 주식 등 유가증권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사건관계인(직무관련자)과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 제한

(취지) 업무목적 외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접촉 장소를 제한하거나 접촉시 보고의무 등을 부여

▶ 사건 관계인 사적 접촉 제한(대검찰청)

- 사건 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기준을 구체화
 -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없는 사적 접촉을 제한
 -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과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 취급중인 사건의 범위 : △ 내사·수사하고 있는 사건, △ 공판이나 송무에 관여하고 있는 사건, △ 형이나 구속의 집행 또는 집행정지를 지휘하는 사건, △ 수사·공소심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결정에 관여하는 사건, △ 직근 상급자의 경우 소속 검사가 이상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사건
- ※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법인, 그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가 사건 관계인인 경우 그 회사의 임원, △ 조합 또는 조합장이 사건 관계인인 경우 그 조합의 임원, △ 사건 관계인의 가족, △ 그 밖의 검사의 처분에 따라 사건 관계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
- 사적 접촉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자와 함께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자와 식사나 여행을 하는 것
 -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자와 회합이나 행사를 하는 것
 -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자 또는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것
- 사적 접촉의 예외 사유인 '정당한 이유'를 명확화
 - 정책 수립이나 의견 교환 등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의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행사 등에서 사건 관계인이나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 사건 관계인이나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자가 참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참석한 행사 등에서 접촉한 경우
 -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사적 접촉 금지(경찰청)

- 업무목적 외 부적절한 사적 접촉 금지(식사·술자리·골프 등)
- 업무상 접촉 시 경찰관서 내에서만 만나도록 '접촉장소 제한'
- 지인(知人)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회피 의무' 제도화
 - 회피 대상 업무를 종래 '친족', '금전적 이해관계 있는 자'에서 '지연·학연 등 친분관계 있는 자와 관련된 수사·단속업무'로 확대

12. 고위직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규정 도입

(취지) 임용 전 재직하였던 특정 단체 또는 기업 등에 대한 특혜제공 가능성 차단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임직원 행동강령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③임원, 상근심사위원 및 「직제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연구소장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될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된다.

13. 직무관련자와 공적·사적 해외여행 사전 심사(예외적 승인)

(취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해외여행이 필요한 경우 공정성 저해여부 사전 심사 후 예외적 승인

▶ 이해관계자 국외출장시 사전 심사제도 운영(한국철도공사)

- 국외출장 지침 제12조(출장의 제한) ①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초청하는 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공기관(정부)에서 출장동행을 의뢰하는 경우
 2. 해외사업 수주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등
- ②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공장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14. 부패행위 제언·주선자에게 1단계 상향된 징계처분 요구제 도입

(취지)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제언·주선자에 대한 처벌까지 강화

▶ 부패행위 제언·주선자에게 1단계 상향된 징계처분 요구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 직무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금품·향응 수수를 제언하거나 주선한자에 대해서는 가중 징계(1단계 상향 제재)

비위 수수 유형 행위	금품 수동 능동	금액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강등	해임	파면		
	능동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15. 부패행위자, 조사분야 보직 영구 금지 등

(취지)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주요 보직이나 부패발생 위험이 높은
보직 부여를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부패발생을 차단

▶ **부패행위자 조사 분야 보직을 영구 금지(국세청)**

-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여 견책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조사 분야 근무를 영구히 배제
- ※ 조사 분야 : 본청 · 지방청 조사국, 세무서 조사 및 재산조사 분야

16. 비위행위 징계처분자 전보조치 및 청렴교육

(취지)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전보조치하고 청렴교육을 받
도록 하여 향후 부패행위 재발을 방지

▶ **금품 · 향응수수자 전보조치 및 청렴 집합교육 이수 의무(공정거래위원회)**

- 금품 · 향응수수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제재처분 후 6개월 이내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
- 금품 · 향응 수수자는 주의 · 경고 이상 제재처분 이후 비사건 부서로 문책성 전보 조치 의무화

17. 부패행위자 승진임용 제한 규정 강화

(취지) 부패행위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 등 불이익 장치 마련

▶ **부패행위자 승진임용 제한(한국조폐공사)**

-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포괄적인 승진임용 제한규정은 있으나,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진임용 제한 규정을 두어 부패행위 예방
- 특히, 외부청탁, 부당한 지시 등으로 부패행위자가 승진임용되어 조직 전반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연계될 소지를 차단
- 금품 · 향응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배임 또는 절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 종료일에 6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 제한(인사관리 규정 제24조)

18. 부패·공익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호 위반자 구체적 처벌기준 도입

(취지) 부패 ·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등을 통해 신고자 보호 위반에 엄정 대처

▶ **부패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호 위반자 구체적 처벌기준 마련
(우체국금융개발원)**

- 상벌세칙 제17조(징계의 양정기준)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징계의결요구 양정기준

징 계 사 유	요 구 기 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10. 부패 · 공익신고 방해				
가. 조사완료 전 피신고인 및 신고내용 공개				고의
나.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고의	중과실
다.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고의	고의	고의
라. 신고 방해 및 신고 취소 강요			고의	고의

19. 청렴마일리지 운영 및 승진 가점화

(취지) 조직구성원의 청렴업무 추진 과정 참여 유도 등 자발적 청렴기반 구축

▶ 청렴마일리지 승진 가점화(한국남부발전)

- 2직급 이상 승진대상자의 청렴마일리지를 승진가점화하는 방식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간부진에 대한 청렴문화 확산하는 등 조직 청렴DNA 형성

20. 부패위험 관리체계 운영

(취지) 부패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응을 위해 부패 위험요인 선별, 진단 등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운영

▶ 부정(Fraud) 위험 관리체계 운영(대한주백보중)

① 회사 업무분석을 통해 업무유형별 44개의 세부 위험요소 도출

- 뇌물수수(21개), 이해상충(1개), 현금절도(12개), 자산유용(6개), 허위지출(1개), 문서위조(3개)

※ (예시) 부정유형별 위험요소와 위험 등급 지정

No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주요 부정위험요소	위험등급
1	부패	뇌물수수	금품수수/향응	회사 내 업무 및 지위를 이용 광고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받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광고 수주	중
8	부패	뇌물수수	직원과 업체 간 유착	지사의 평가담당자가 업체와 담합하여 평가 등급을 조작	중
20	부패	뇌물수수	채용/취업비리	시험문제유출 및 입사서류지원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회사의 이미지 실추	중
22	부패	이해상충	특수관계 고객 거래	계약 담당자가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에 따라 특정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위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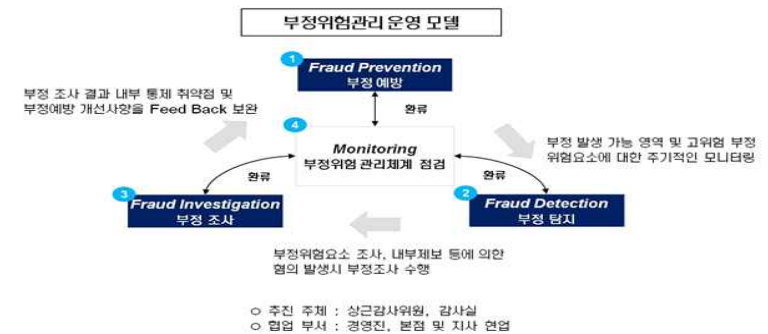
② 위험요소별 부정 징후에 대한 세부점검을 위해 체크리스트(44개) 마련

※ (예시) 부정위험 진단 체크리스트

번호	부정 위험	부정 징후	점검 방법
31	직원이 분양계약자에 대한 환급 금액을 관련 자의 계좌로 이체 후 횡령	분양계약자의 환급계좌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잦은 경우 등	인사마스터의 직원 정보 데이터 수령 후 분양계약자 데이터와 주소 또는 우편번호 등으로 연결하여 상호 일치 되는 건을 추출 확인

③ 부정위험 관리체계 수립

- 「예방-탐지-조사」의 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부정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부정위험 관리체계 영역별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과제 이행

※ (예시) 추진영역별 세부추진과제

전략목표	전략방향	추진영역	세부추진과제
부정위험 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한 부정부패 제로 달성	부정위험 관리체계 인프라 구축 및 개선	부정예방	부정방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7개 : 감사실(반기 1회)
	부정위험요소 진단 운영	실태조사	부정위험 평가체계 수립 및 운영 등 4개 : 감사실(연간)
	부정위험 관리체계 효과적 운영	부정조사	부정 조사에 대한 체계적 수행절차를 마련 : 감사실(수시)
	부정위험 관리체계 운영 안정화	모니터링	부정위험 관리체계 관련 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 4개 : 감사실(반기 1회)

④ 「부정위험 관리지침」을 제정('13.11월)하여 위험관리 업무 전반을 규율

- 목적, 적용범위, 부정의 정의, 부정의 유형(부패, 자산횡령, 허위보고), 관리 책임자, 부정위험 예방활동, 부정위험 진단 체크리스트, 부정위험평가, 부정위험점검활동, 점검결과 보고 및 활용, 부정조사 등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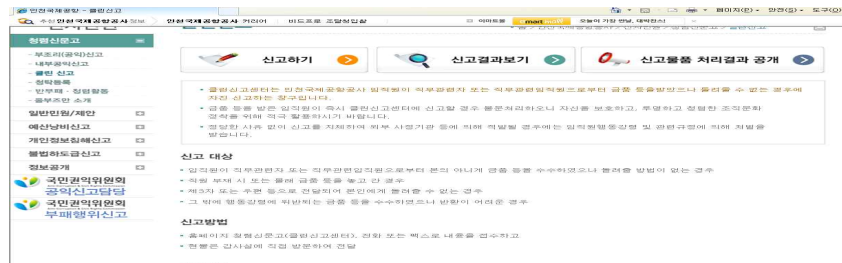
- 17 -

▶ 금지된 금품의 처리결과를 외부에 공개(인천국제공항공사)

- 윤리규정 제28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즉시반환이 어려운 금품 등의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외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신고물품 처리결과 공개' 사이트 신설(13.10.30.)

※ '13년 상반기 5건의 처리결과와 공개(신고자, 제공받은 물품, 제공자, 처리내용 등)



▶ 계약 전 과정을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소방방재청, 충청북도 등)



▶ 발주계획, 입찰·개찰, 계약현황 등 모든 계약사항 공개(충청남도)

- 계약의 발주부터 대금지급까지 계약관련 전 과정 공개로 투명성 확보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평가결과까지 공개하여 부패개연성 차단

▶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공주시)

제2조(공개 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 결과

제3조(공개 방법) ① 시장은 제2조제1항 각호의 사례를 모아 매년 한 차례 사례집을 발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한국서부발전)

- 회사 차량, 물품, 동산, 지적재산권 등 회사의 공용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한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 환수조치(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 임직원 청렴윤리 규정 제16조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① 직원은 회사 차량·선박 및 각종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회사의 공용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시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 가능)을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 해외취업연수사업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한국산업인력공단)

- 무자격 연수기관의 제안서 위·변조, 부적격자 연수 참여, 허위 출장보고 등 지원금 부당신청, 허위 증빙서류 취업정산금 청구 등 해외취업연수 부실 발생
- 부정수급 금액의 2배 징수 등 제재를 강화하고 환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

▶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확대(해양경찰청, 강원도, 경기도 등)

- 업무추진비 공개를 과단위까지 확대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양경찰청)
- 도지사, 부지사, 감사관에서 본청 실·국장 및 직속기관장까지 공개 확대(강원도)
-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원 및 부서장의 업무추진비까지 분기별 공개(경기도)

▶ 업무추진비 인적사항 기재대상 기준을 30만원으로 강화(한국원자력환경공단)

- 편법 분할결제 등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적사항 기재대상 건당 집행 기준을 정부 예산집행기준인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강화

▶ **업무추진비 총액·건수 및 집행대상자 명단까지 공개(경기도교육청)**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을 감사실에서 전직원으로 확대(한국전력공사)**

- 종래 감사실 중심의 특이거래 위주 점검체계에서 모든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사내 포털에 실시간 공개하여 임직원 자율감시

※ 사용일시, 장소, 목적, 예산, 사용자, 정산자 등 공개

구 분	현행 시스템	신규 추가 시스템
시스템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	법인카드 임직원 자율모니터링
점검자/점검주기	감사실 1인 / 월 1회	전 직원(19,256명) / 실시간
건 수	월 평균 5,630건	월 평균 23,580건 (1.2건/인)
비 고	특이거래 점검	모든 법인카드 사용내역 점검

- 전직원 자율 모니터링 시행 이후 사용금액 감소 효과

▶ **외부전문가 감사인력 Pool 구성·운영(경기도 부천시)**

-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IT 전문가 등으로 감사인력 Pool을 구성하여 분야 별 감사에 활용
- 예산낭비 요인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업무분야별 정책효과 분석 및 대안제시
- '12년 주차 및 회계 분야 예산낭비요인 발굴 22억 4천만원의 재정절감 효과

▶ **사업별 청렴지킴이 운영(제주교육청, 대전광역시)**

- 공사, 물품, 용역 등 사업별로 명예감사관 등을 청렴지킴이로 지정, 계약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활동상황 기록 유지)
-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실시 후 민간 청렴지킴이에게 처리결과 통지

▶ **청렴시민감사관 독립성 강화 및 시정요구안 수용(공정거래위원회)**

제45조(청렴시민감사관의 운영)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간 2회(6월, 12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수석 청렴시민감사관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1. 부패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비리제보
2. 부패취약분야 감사 요구
3.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건의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 정기회의 또는 수시회의를 통해 청렴시민감사관 5인이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별지 14호 및 별지 15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감사실시를 요구 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시 감사 개시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개시한 경우 2개월 이내에 감사를 마무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2개월 내의 범위에서 감사를 연장할 수 있다.

⑥ 청렴시민감사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등에서 사업자비밀 보호 등을 위해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엄수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시 별지 제16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관리 및 직무수행을 지원토록 한다.

⑧ 시민감사관의 임명, 감사요구 내역, 감사실시 결과 등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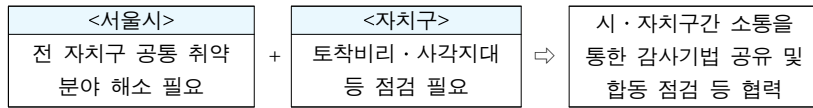
▶ **감사결과공유시스템(<http://ais.msip.go.kr/gs>) 구축·운영 (미래창조과학부)**

- 산하 73개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관별 감사계획, 감사노하우, 규정 및 지침 등 사례 공유

- 내·외부 감사내용과 조치결과 등록·관리

▶ 시·자치구 감사협의회 구축·운영(서울특별시)

- 시와 자치구간 감사정보의 공유 및 협력 증진



▶ 산하기관과 반부패 워크숍 개최(중소기업청)

- (목적) 산하기관의 반부패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감사 관련 지식과 전략 공유를 위해 감독기관과 산하기업간 논의의 장 마련
- (논의 내용) 공공기관 정상화 방향,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감독 강화 방안, 취약분야 감사사례, 행동강령 교육 등

▶ 전 부서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경기도 성남시)

- 시 산하 136개 전 부서가 사용하는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일상 경비출납원과 지출담당자 등 지정된 관리책임자에게** 통지
- ※ '13년 2월 제도 도입 이후 5개월 동안 총 33건의 잘못된 집행 확인(착오결제 24건, 중복결제 6건, 신용카드 착오이용결제 3건)

▶ 산하기관에 대한 반부패 청렴평가 강화(문화체육관광부)

- 산하기관 중 기타 공공기관 및 단체(32개)까지 반부패항목을 평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기관장 경영실적으로 반영
- ※ 한국문화정보센터,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악방송, 한국문학번역원, 태권도진흥재단, 국립현대미술관, 국민생활체육회 등 32개 기관

▶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반부패 시책평가(서울특별시)

- 자체 감사활동 실적, 업추비 공개, 간부청렴도 평가, 제도개선 과제 이행실적 등 반부패 인프라 구축현황 평가
- '13년 25개 자치구와 16개 투자·출연기관에 대해 평가
- ※ 자치구 중 6개 우수기관(영등포구, 강북구, 마포구, 구로구, 중구, 서대문구)에 대해 표창
- ※ 투자·출연기관 중 5개 우수기관(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농수산식품공사, 디자 인재단, 복지재단)에 대해 표창

▶ 공급자 행동강령 제정(한국전력공사)

- 한전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간 행동강령 일원화로 윤리적 동반성장 구현
- 입찰참가신청이나 계약체결시에 공급자 행동강령 준수·서약을 의무화하여 협력업체 등의 동참 유도

<세부 가이드라인>

윤리적 기준	사회적 기준	환경적 기준
▶ 금품 등 뇌물제공 금지 ▶ 담합 및 불합리도급 금지 ▶ 청탁행위 금지 ▶ 소속직원 윤리교육 의무	▶ 조세 및 노동법규 준수 ▶ 합법적인 근로제공 ▶ 인종·성별차별 금지	▶ 환경 및 안전법규 준수 ▶ 환경친화적 기술확산 ▶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 청렴계약제 위반시 입찰 취소, 계약 해제 등 제재 강화(한국수력원자력)

- 계약규정 제4조의2(청렴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청렴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체결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규정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계약담당자는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회사의 이익을 현저히 해(害)한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부패위험성이 높은 민간분야에 대한 제도 정비(경기교육청 등)

- (경기교육청) 학부모회를 제도화하고, 일부 음성적으로 운영되던 학부모회 회비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여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 (경상북도 교육청)유치원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단식부기를 복식부기로 변경 권고, 유치원 예산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 (국토교통부) 감정평가 업무를 수주할 목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발생하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외 대가를 받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어 업무수주 목적의 금품제공 행위 처벌에 한계가 있는 문제 보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

▶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한국동서발전)

-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신문고, 핫라인 등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입찰참가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계약규정)
- 부패행위 신고제도 및 접속경로를 입찰 공고문에 명시

▶ 고위직 공무원이 선도하는 청렴교육 실시(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 신설기관임에도 30여명의 고위공무원이 참여하여 1일 과정의 맞춤형 청렴교육을 청렴연수원에서 실시(해양수산부)
-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연간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 국세청 : 지방청 4급 국장급 이상, 관세청 : 과장급 이상

▶ CEO 주관 순회 교육 실시(한국남부발전)

- 산하 7개의 모든 사업소 대상 순회 특강·간담회 실시('12년 7회, '13년 9회)
- 기관장이 신규임용 간부에게 부패근절과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을 유도를 당부하는 내용의 청렴편지 직접 전달('12년 10명, '13년 9명)

▶ 상임감사위원 순회 교육 실시(한국공항공사)

- 전국 17개 사업장·교육원 대상 80회 순회, 반부패 청렴 특강·간담회
-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 청렴 사이버교육 수강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실시(국가보훈처, 서울특별시, 평창군, 대구 달성군·남구)

- 매년 일정 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조직 전체의 청렴문화 확산 도모
※ 국가보훈처, 서울시, 강원도 평창군 : 연간 5시간 이상
※ 대구 남구청 : 연간 7시간 이상

▶ 직무연수·훈련 과정에 청렴교육 과정 운영(전남교육연수원)

- (과정 명) 행복한 청백리 되기
- (교육 기간) 연간 2회에 걸쳐 각 19시간(원격연수 5시간, 집합연수 14시간)씩 운영

- (교육 내용) 공직윤리와 청렴, 역사에서 배우는 청렴의식, 청백리 유적지 현장 교육 등
- (교육 대상) 교육청 소속 직원(사립학교 포함)

▶ 직무연수 과정 중 일정 시간을 청렴교육에 배정(국가보훈처 보훈교육연구원)

- 국가보훈처 소속 실무직원 대상 훈련인 보훈입문과정, 보훈실무과정, 보훈실무심화과정에 청렴교육 1~2시간 배정
- 국가청렴수준 현황, 행동강령 위반사례, 공직기강 확립 및 감사지적 사례 등 교육

▶ 비위행위자 외부위탁교육 근거 마련(한국가스안전공사)

- 임직원 행동강령 제30조 (교육) ③ 제26조 ③항에 따라 강령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 책임관이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직 내 소통 활성화(통일부)

- 실무자급 회의체인 화이트백 미팅(각 실국 및 소속기관 사무관 및 주무관급 회의체)을 통한 청렴시책 아이디어 제안 활성화
※ '유니크(Unic-C : Unikorea+Clean) 청렴문화 조성 사업' 등 제안

▶ 고위공무원 청렴수준 자가 진단(공정거래위원회)

- 국장급 고위공무원에게 각종 윤리규정(공직자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등 12개 규정)의 숙지도 평가 및 결과 공개(분기 1회, 연간 4회 실시)
- 규정의 내용, 주요 위반 사례 등을 4지 선택형으로 설문화하여 10문항 출제
- 국장급 고위공무원 평가결과를 소속 직원 평가결과와 합산하여 간부회의시 감사담당관이 보고하고, 국별 순위를 내부 인트라넷에 공개

▶ 청렴결의 대회(성남시 시설관리공단)

- 기관의 청렴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청렴서약식, 청렴결의문 낭독)

▶ 반부패·청렴 Day 운영(국가보훈처)

- 반부패·청렴에 대한 이해증진과 활성화로 전 직원의 청렴의식 제고
- △ 행동강령 문자 알리미 운영 : 행동강령 내용, △ 청렴명언 등 전 직원 발송, △ 청렴주의보 발령 : 행동강령 위반사례 등 게시, △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 청렴도 자가진단 : 자가진단, 행동강령 문제 게시, 개인청렴도 측정

▶ **부서간 청렴경쟁시스템 운영(경기도)**

- 32개 실국 및 150개 과 대상 청렴수준 및 노력을 평가함으로써 경쟁 장려
- 평가기준 : △ 학습 성장 : 청렴교육 이수 10점, 행동강령 평가점수 및 응시율 15점, △ 참여 : 청렴시책 제안 및 추진실적 10점, 청렴도 자가진단 응시율 15점, △ 청렴 수준 : 외부청렴도 측정점수 20점, 부서장 조직문화 향상 노력도 10점, △ 공직 기강 : 징계 감점 20점

▶ **공직자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시행(경기도)**

- (목적) 경기도의 청렴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 (주요 내용) 청렴대상 운영,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청렴해피콜 운영 등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규정
 - ※ 청렴 대상 :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기관 또는 개인 등에 포함
 - ※ 청렴도 평가 : 경기도 소속 3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의 청렴성 등 평가
 - ※ 청렴해피콜 : 경기도 공무원이 처리한 인허가 등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시 파면(전라남도)**

구분	징계 사유	징계기준						비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금품·향응 수수 등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3. 청렴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하여 해임등이 된 경우 전라남도 투자·출연 기관 취업을 영구 배제

▶ **청렴의무 위반시 징계 시효 연장(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 **한국공항공사 인사규정 제56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사규정 제58조(징계 등 사유의 시효)** ① 징계 등 의결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는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등 협력업체와의 부당한 거래 관계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 제정(한국조폐공사)**

- 행동강령 제23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비위면직자를 신규채용 결격사유에 포함(한국전기안전공사)**

- 신규 채용과정에서 부패행위 경험이 있는 자의 채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비위면직자를 채용결격 사유에 추가
 - * 인사규정 제6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직원을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고 신원조치를 필한 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
-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인한 면직자 채용 제한(우체국물류지원단)**

- 인사관리세칙 제12조(공개채용 및 절차)
 - 8.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파면·해임·계약의 직권해지 등 징계면직자는 5년간 채용을 제한하고 서류전형에서 10%를 감점한다.